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3. 9.16.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본 조례 제9조(수수료감면)의 본문 내용중 "공공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시책 추진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등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등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 골자

제9조(수수료감면) 조항에 불명확한 본문 자구수정과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를 7호로 신설한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업무) 제1항제2호중 "첨가물기구"를 "첨가물, 기구"로 하고, "공중위생법에 음용수"를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감면)중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을 "국가기관이 그 기능 수행상"으로 하고, 제7호를 6호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명중 "시험처리기관"을 "시험처리기간"으로 하고, 수질관계란의 처리기간 "7일"을 "14일"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음용수에 관한 시험

구	분	수수료	비 고
음용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1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7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p>다만, 각급학교·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 음용수 검사 수수료의 50%로 함.</p>			

[별표 2] 제7호 음용수중정량시험중 "페니트로티은" 뒤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수 수 료	비 고
· 카바릴	4,000	
· I.I.I - 트리클로로에탄	4,0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000	
· 트리클로로에틸렌	4,000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3조 (업무) ① (생략)</p> <p>1. (생략)</p> <p>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품외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u>첨가물기구</u>, 용기,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u>공중위생법에 음용수</u>, 수처리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남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제4조 (원장) ① (생략)</p> <p>② <u>소장</u>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원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3조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u>첨가물, 기구</u> ----- ----- ----- ----- ----- ----- ----- <u>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u> -----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 (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원장</u>은 ----- ----- -----</p>	<p>제3조 (업무)</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6.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 (원장)</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검사, 시험의뢰) ①(생략)</p> <p>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받아올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 (수수료 감면) 수수료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5. (생략)</p> <p>6. 삭제</p> <p>7.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 검사.</p>	<p>제6조 (검사, 시험의뢰)</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원장은 ----- ----- ----- ----- ----- ----- ----- ----- ----- -----</p> <p>제9조 (수수료 감면) (현행과 같음)</p>	<p>제6조 (검사, 시험의뢰)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 (수수료 감면) ----- -----국가기관이 그기능 수행 상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p> <p>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p>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시험용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 기관			【별표 1】 시험용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 기간			【별표 1】 (개정안과 같음)
시험 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시험 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수질 관계	7 일	1. 물 3리터 이상	수질 관계	14 일	1. (현행과 같음)	
【별표 2】 6. 음로수에 관한 시험			【별표 2】 6. 음용수에 관한 시험			【별표 2】 (개정안과 같음)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	
정호수(각급학교 군부대및 군이하 지역소재)			음용수 검사			
○ 세균학적 검사		4,000	○ 세균학적 검사			
○ 이화학적 검사		2,000	(수수료액표 제1항 해 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간이상수도(각급학교 군부 대 및 군이하 지역소재)			○ 이화학적 검사			
○ 세균학적 검사		4,000	(수수료액표 제7항 해 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 이화학적 검사		2,000	다만, 각급학교, 군부대에 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 수로는 일반음용수 검사 수수료의 50%로 함.			
상수도원수(각급학교 군부 대 및 군이하 지역소재)						
(보사부음용수기준 28개 항목)						
○ 세균학적 검사		4,000				
○ 이화학적 검사		34,000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	
기타 (상업용정호수(지하수) 및 시지역소재 정호수 등) ◦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7항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7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7. 환경분야에 관한 시험		7. 환경분야에 관한 시험		(개정안과 같음)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	
음용수중 정량시험 ◦ 세레늄 ◦ 다이아지논 ◦ 파라티온 ◦ 말라티온 ◦ 페니트로티온 ◦ (신설)	4,000 4,000 4,000 4,000 4,000	음용수중 정량시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카바릴 ◦ 1.1.1. -트리클로로에탄 ◦ 테트리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000 4,000 4,000 4,000	

조례 제 호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업무) 제1항제2호중 "첨가물기구"를 "첨가물, 기구"로 하고, "공중위생법에 음용수"를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9조 (수수료감면)중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을 "국가기관이 그 기능 수행상"으로 하고, 제7호를 6호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명중 "시험처리기관"을 "시험처리기간"으로 하고, 수질관계란의 처리기간 "7일"을 "14일"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음용수에 관한 시험

구	분	수수료	비 고
음용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1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7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다만, 각급학교·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 음용수 검사 수수료의 50%로 함.			

[별표 2] 제7호 음용수중정량시험중 "페니트로티온" 뒤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수 수 료	비 고
· 카바릴	4,000	
· I.I.I - 트리글로로에탄	4,0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000	
· 트리클로로에틸렌	4,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